

【조 약】

○조약제2342호(무기거래조약) 4

【부 령】

○행정자치부령제108호(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26

○행정자치부령제109호(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29

【고 시】

○기획재정부고시제2017-3호(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30

○보건복지부고시제2017-21호(흡연 및 과음 경고문구등 표시내용 일부개정) 31

○환경부고시제2017-38호(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의 면제인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 31

○국토교통부고시제2017-53호(대구연경 공공주택지구 주택지구 밖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 34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4호(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경부고속도로~용인서울고속도로 연결로
<서울방향> 건설공사] 46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5호(광주대구고속도로 담양~성산간 건설공사 지형도면) 47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6호(삼척~동해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토지세목) 48

○국토교통부고시제2017-87호(제3차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2016~2020> 주요내용) 50

○문화재청고시제2017-20호(화순 적벽 국가지정문화재<명승> 지정) 52

○문화재청고시제2017-21호(2017년도 감리 대상 문화재수리) 54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16호(국적상실) 57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5호(국적취득) 65

○양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2호(국적취득) 65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국적취득) 65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6-3호(국적취득) 65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고시제2017-3호(국적상실) 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4호(하천점용 허가) 66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7-76호(도로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67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9호(항로표지가 현상<광달거리> 변경) 79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0호(항로표지 설치<신설 및 현황변경>) 79

(이면 계속)

○군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7호(항로표지 현황변경<위치변경>)	79
○마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15호(항로표지 기능정지)	80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7-8호(항로표지 폐지)	80
○부산전파관리소고시제2017-1호(무선국<항공국> 변경허가)	80
○국가기술표준원고시제2017-23호(한국산업표준 제정 예고)	81

【공 고】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4호(2017년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시험 시행)	82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5호(방재전문인력 교육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83
○국민안전처공고제2017-57호(중앙재난심리회복지원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83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7-12호(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84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8호(신기술사업금융업 등록)	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7-29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6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0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중정정)	87
○기획재정부공고제2017-31호(세무사 징계의결내용)	87
○교육부공고제2017-31호(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8
○행정자치부공고제2017-61호(디지털인증서비스 인증정보)	88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39호(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89
○보건복지부공고제2017-90호(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91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호(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92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3호(신기술 지정 신청)	93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84호(신기술 지정 신청)	9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5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94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6호(게임물 등급분류 거부 결정)	97
○게임물관리위원회공고제2017-18호(게임물 등급분류 결정)	97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7-25호(행정처분 사전<청문>통지)	98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29호(사회적기업 인증취소)	99
○대전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17-17호(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99
○원주지방국토관리청공고제2017-2호(원주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공사완료<2단계>)	9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5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102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7-13호(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	102
○충청지방우정청공고제 2017-14호(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예정자)	103
○전북지방우정청공고제2017-1호(점심시간 휴무제도 시행 대상국 현황)	104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공시송달)	10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7-8호(공시송달)	122
○광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11호(공시송달)	122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7-4호(공시송달)	127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7호(무선국 허가실효에 대한 공시송달)	129
○제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7-2호(공시송달)	130
○전파시험인증센터공고제2017-2호(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적합등록, 해지)	132

【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제457호(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수당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259
--	-----

【지방자치단체】

○(서울)은평구고시제2017-13호(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260
○대구광역시공고제2017-142호(환경건설팅회사 등록).....	260
○경기도공고제2017-166호(측정대행업 신규등록).....	260
○경기도공고제2017-169호(측정대행업 신규등록).....	261

【인 사】

○인사발령(인사혁신처)	261
--------------------	-----

【상 훈】

○서훈(법원 · 충청북도)	263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전주지방법원)	267
○압수물환부공고(서울서부지방법검찰청)	267
○결정(청주지방법원 · 부산지방법원)	268
○면책결정공고(대구지방법원)	308

●국토교통부공고제2017-179호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 제4항에 의거 공고하니, 동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661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9일

국토교통부장관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

1. 기술개발자

가. 성명 또는 법인명(대표자 성명) : ① (주)세진에스씨엠(채홍석) ②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유찬, 이상현)

나. 전화번호 : ① 070-7780-5464 ② 02-2191-9147

2. 지정번호 : 신기술 제661호

3. 명칭 : 철골보의 단부를 강판으로 감싸고 내부에 철근과 콘크리트로 보강한 철골합성보 공법 (Eco-Girder공법)

4. 내용요약

<분야>

건축 / 철골 / 복합 구조체

<기술의 요지>

이 신기술은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 설계시 최적설계를 위해 중앙부에 발생한 휨모멘트(단부모멘트의 50~60%)로 전체 보 구간을 설계하고, 단부에 초과되는 휨모멘트를 강판과 철근콘크리트로 보강함으로써 철골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 단부 보강형 철골 합성보이다. 보의 단부에 설치되는 성형강판은 타설시 거푸집 역할을 하고, 강판 내부의 콘크리트를 구속하며, 전단응력 저항 및 보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철근의 설치가 용이하고, 기둥의 외면에서부터 설치되므로 기둥내부의 철근 및 H형강과 간섭되지 않는다.

<범위>

SRC 기둥과 접합되는 철골보에 있어서, 보의 중앙부는 철골보로 하고 단부는 성형강판을 H형강 하부 플랜지에 용접 접합하며, 단부에 보강철근을 배근한 후 성형강판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단부 보강형 철골합성보 공법

5. 보호기간 : 2012.06.11 ~ 2017.06.10. (5년)

6.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전화: 031-389-6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

가.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

나.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

1)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도용한 경우

2)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

3)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다. '나'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